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체 확대 등〉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707호)

2026. 2.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체 확대 등	2
 [참고자료 1]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	6
[참고자료 2]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개요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용태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7. 24.
3. 회 부 일 : 2025. 7.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

Ⅲ. 검토의견

1.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체 확대 등

개정안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u>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u> <u>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u>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18조1)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원활한 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한 체계적·통합적·단계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이주배
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초학습, 한국어 교육,
진로·자립 지원, 상담 등을 지원중임.

< 성평등가족부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내용 >

구 분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기관
이주배경 청소년지원	이주배경청소년	▶ 레인보우스쿨 운영 * 사회문화체험 활동, 직업체험 등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실생활에 유용한 한국어 교육과정 * 토픽 읽기/듣기/쓰기, 취업용, 중도입국 자녀용 등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센터 포함)
기초학습 지원	미취학, 초등학생 다문화 아동 * 난민, 외국인가정 자녀 포함	▶ 학교 적응력 향상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기초학습 지원 * 기초 한글 및 수학, 읽기·쓰기 등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 학령기 자녀 (7~24세) * 난민, 외국인가정 자녀 포함	▶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안정적 으로 생활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개정안과 같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첫째, 다문화 학생 현황 및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을 보면, 이주배경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지방자치단체도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 학생 현황(2025년 4월 기준) >

(단위 : 명)

연도	다문화 학생 수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2025년	202,208	116,601	51,172	33,622	813
2024년	193,814	117,459	47,910	27,673	772
2023년	181,178	115,639	43,698	21,190	651
2022년	168,645	111,640	39,714	16,744	547
2021년	160,058	111,371	33,950	14,308	429
2020년	147,378	107,694	26,773	12,478	433

자료 : 교육기본통계(교육부에서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발표)

주 1) 다문화 학생 수 = 국제결혼가정 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

2) 국제결혼가정 자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으로 분류됨

- 국내출생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 중도입국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3)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최근 5년간 18세 이하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단위 : 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64,626	275,990	289,529	299,440	308,402

자료 : 외국인주민현황(행정안전부에서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발표)

둘째, 현행법 제1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30조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성평등가족부장관만 규정하고 있는바,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것이 체계상 보다 바람직함.

셋째, 성평등가족부뿐만 아니라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체류자격 연장), 교육부(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복지부(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등)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²⁾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이에 부합함.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공감하며,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정안의 취지를 수용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5

2) <법무부, 교육부, 복지부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부처	사업	법적 근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4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51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 「교육기본법」 제4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복지부	국가예방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참고자료 1】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

□ 개요

- (목적) 이주배경청소년*의 원활한 사회적응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 · 통합적 · 단계적 서비스 지원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 (경과) '06년 이주배경청소년대상 사업 실시
 - '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지원 및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5조(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역량 강화 사업
 - 진로교육(진로 탐색·진학설계, 자립역량, 진로캠프 등 직업체험) 운영 등
-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의 욕구(심리정서, 진로 등) 탐색하여 다양한 상담서비스 제공(대면·비대면·온라인·집단상담 및 상담통역 지원 등)
-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초·중학교 및 청소년기관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인력 양성 등 연수 · 개발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실무자 양성과정, 예비청소년지도자 교육과정 운영 등

□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통계 현황

다문화 학생 (교육부, '25.4월)	외국인주민 자녀 (행정안전부, '23.11월)	북한이탈 청소년 (통일부, '24.12월)
202,208명	308,402명	411명

- ※ 다문화 학생 : 초·중·고 재학생 현황으로 미취학아동, 학교 밖 청소년 미포함(교육통계 조사결과, 2025.4.1. 기준)
- ※ 외국인주민 자녀(18세이하)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현황으로 외국인가정 자녀 미포함('23.11월 기준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결과)
- ※ 북한이탈 청소년(18세이하) : 북한출생 청소년 현황으로 국내출생, 제3국출생 미포함(통일부 하나넷, 2024년 12월말 기준)

【참고자료 2】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개요

□ 설립목적 및 근거

- (목적)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등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동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 연혁

- 2006. (재)무지개청소년센터 개소
- 2011.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프로그램(레인보우스쿨) 상설운영
- 2012.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및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2012.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으로 명칭 변경

□ 2025년도 예산 : 2,428백만원

□ 주요 사업

- 이주배경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 레인보우스쿨(진로 탐색진학설계, 자립역량, 진로캠프 등 직업체험) 운영 등
-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의 욕구(심리정서, 진로 등) 탐색하여 다양한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초·중학교 및 청소년기관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인력 양성 등 연수·개발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실무자 양성과정, 예비청소년지도자 교육과정 운영 등